

# 2026년도 제1회 옥천군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26년도 제1회 옥천군의회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7일

옥천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br>분야  | 임용<br>등급      | 임용<br>인원 | 근무<br>기간 | 근무예정<br>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
| 정책<br>지원관 | 8급<br>(일반임기제) | 2명       | 2년       | 옥천군의회<br>사무과<br>(정책지원팀) | - 조례·예산·결산 등 의정활동 관련 자료의<br>수집·조사·분석 및 지원<br>- 서류제출 요구, 행정사무감사·조사, 군정질의,<br>5분 자유발언·건의문 등 의정활동 지원<br>- 공청회·세미나·토론회·간담회, 의원연구단체<br>등 의정활동 관련 업무 지원<br>- 의정활동 관련 홍보자료 수집·작성 및 국내<br>·외 정책 우수사례 조사·견학 지원<br>-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br>수집·조사·분석 및 지원 |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근무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2. 응시 자격 요건

### 가.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37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 나. 공통요건

- 기 준 일: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삭제
  - 바. 삭제
  -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을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다. 직무 관련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채용분야          | 자 격 요 건                                                                                                                                         |
|---------------|-------------------------------------------------------------------------------------------------------------------------------------------------|
| 정책지원관<br>(8급) | 1.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 이상 <u>관련분야 실무경력*</u> 이 있는 사람<br>2. 2년 이상 <u>관련분야 실무경력*</u> 이 있는 사람<br>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u>관련분야 실무경력*</u> 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인정기관: 국가기관, 국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알리오'에서 확인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에서 확인되는 기관), 연구소·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포함), 법인·민간기관·기업 등

\* 알리오: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 / 클린아이: 지방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cleaneye.go.kr)

- 관련분야: 지방행정·지방자치, 법무·법제·법률해석, 예산·결산 및 재정사업의 분석·검토, 감사·조사, 정책기획·개발, 정책 및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분석·검토, 입법지원, 의정활동 지원 및 보좌 등

**○ 경력 인정기준**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및 주당 근무시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직위(직급)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력에 한하여 인정
- 학위취득 과정에서 수행한 경력은 관련분야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주 40시간 미만 또는 비상근 경력은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
- 경력증명서만으로 담당업무 또는 관련분야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추가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단순 사무보조·인턴·자료취합 등 관련분야 실무경력으로 보기 어려운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3.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함

| 구 분                 | 근무시간   | 보수수준     |          | 비고                                   |
|---------------------|--------|----------|----------|--------------------------------------|
|                     |        | 상한액      | 하한액      |                                      |
| 정책지원관<br>(일반임기제 8급) | 주 40시간 | 62,096천원 | 44,296천원 | (09:00~18:00,<br>1일 8시간,<br>주 5일 근무) |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평가 하여 연봉 및 임기연장 등에 반영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본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안내)

###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28.(수) ~ 11. 3.(화)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 수 처 :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군청 3층)
  - 주 소: (우)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99, 의회사무과(의정팀)
-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응시수수료를 `옥천군수입증지` 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를 동봉해야 함(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불가)
- ※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전화(043-730-3932)로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함.

### 나.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br>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 최종 합격자 발표           |
|-------------------------|---------------------|---------------------|---------------------|
|                         | 일 시                 | 장 소                 |                     |
| 2026. 11. 11.(수) 예정     | 2026. 11. 18.(수) 예정 | 옥천군청 3층<br>군의회 간담회실 | 2026. 11. 24.(화) 예정 |

※ 면접시험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면접시험일시·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다.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 통보 및 옥천군의회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 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시행
- 2차시험(면접시험): 개별 통보 및 옥천군의회 홈페이지 공고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평가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5. 제출서류

###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
  - 판매장소 : 옥천군청 1층 종합민원과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증지 날인
  -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공무원인 경우 별도로 인사기록카드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별지5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7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8호 서식) 1부
-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보험 가입 전체기간)

##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서식 제10-1호) 1부
- 임용 관련 분야 증빙자료(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상훈 등)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합니다.
  -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반환
- 시험전형 결과 임용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2호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 퇴직수당이 환수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착오·누락·연락불능 및 응시자 주의(유의)사항 미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SMS(문자) 통보하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옥천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 인사담당자 (☎043-730-39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출서류 서식 각 1부(별도 첨부)